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5가합52285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205728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5가합522854 판결

전문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주식회사

4. D

변론 종결 2015. 8. 25.

판결 선고 2015. 9. 22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127,020,299원 및 그 중 126,842,801원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나. 피고 C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684,772,077원 및 그 중 684,291,857원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각 2015. 6. 17.까지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2014. 12. 9. 체결된 매매계약을 26,151,373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원고에게 26,151,37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2014. 10.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B에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4. 10. 31. 접수 제489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등

(1) 피고 주식회사 A,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는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원고와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약정1) 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표]

순번	피보증인	연대보증인	보증일자	보증기한	보증원금 / 대출금액	대출은행
1	피고 A	피고 B	2006. 6. 7.	2007. 6. 7.까지 (2015. 10. 23.까지로 연장)	일본국법화 2,040만 엔 (1,360만 엔으로 감축) / 2,400만 엔	한국외환은행
2	피고 C	=	2010. 3. 10.	2018. 3. 10.	4억 2,500만 원 / 5억 원	한국씨티은행
3	11	=	2012. 9. 27.	2013. 9. 17. (2015. 9. 25.까지로 연장)	4억 원 / 5억 원	

(2)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피보증인을 대위하여 대출원리금 등을 변제한 경우 피보증인은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에 의한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2014. 12. 5. 이 사건 제1보증 관련 대출금에 대하여, 피고 C는 2014. 10. 28. 이 사건 제2, 3보증 관련 대출금에 대하여 각 폐업으로 신용보증사고를 유발하여, 원고가 위 각 은행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에 따라 2015. 2. 10. 한국외환은행에 이 사건 제1보증과 관련하여 128,175,071원, 2015. 2. 27. 한국씨티은행에 이 사건 제2, 3보증과 관련하여 689,378,443원(= 이 사건 제2보증 관련 284,364,745원 + 이 사건 제3보증 관련 405,013,69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제1보증과 관련하여 2015. 2. 10. 1,332,270원, 이 사건 제2보증과 관련하여 2015. 2. 27. 5,071,880원, 2015. 3. 9. 14,706원을 각 회수하였고, 위 회수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확정되는바, 이 사건 제1보증과 관련하여 438원, 이 사건 제2보증과 관련하여 1,720원의 확정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

(3) 한편 원고는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이 사건 제1보증과 관련하여 177,460원, 이 사건 제2, 3보증과 관련하여 766,730원을 각 지출하였고, 이후 이 사건 제2, 3보증 관련 법적절차비용 중 288,230원을 회수하였다.

다.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가) 피고 B은 2014. 12. 9. 위 피고의 형인 피고 D과 피고 B이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그 순번대로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6,700만 원(= 이 사건 제1부동산 4,500만 원 + 이 사건 제2부동산 2,2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0.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56436호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는 위 매매계약 이전인 2014. 5. 13.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여산일심신용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매매계약 이후인 2014. 12. 19. 말소되었다.

(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피고 B은 2014. 10. 29.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제3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부동산을 포함한 익산시 E 답 2855.1㎡ 전부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E 토지'라고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위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31. 같은 등기소 접수 제48927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 피고 A, B, C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11호증, 을라 제3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C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을 대신하여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피고 A, B은 연대하여 이 사건 제1보증 관련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구상금 합계 127,020,699원[= 미회수 대위변제금 126,842,801원(= 128,175,071원 - 1,332,270원) + 확정지연손해금 438원 + 법적절차비용 177,460원] 및 그 중 미회수 대위변제금 126,842,80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2. 10.부터, 피고 C, B은 연대하여 이 사건 제2, 3보증 관련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구상금 합계 684,772,077원[= 이 사건 제2보증 관련 미회수 대위변제금 279,278,159원(= 284,364,745원 - 5,071, 880원 - 14,706원) +이 사건 제3보증 관련 미회수 대위변제금 405,013,698원 + 이 사건 제2보증 관련 확정지연손해금 1,720원 + 법적절차비용 478,500원(= 766,730원 - 288,230원)] 및 그 중미회수 대위변제금 684,291,857원(= 이 사건 제2보증 관련 279, 278,159원 + 이 사건제3보증 관련 405,013,69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2.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5. 6. 17.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4. 12. 9. 및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4. 10. 29.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그즈음 피고 A, C의 폐업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2014년 2월경 원고가 각대출은행에 보증책임을 이행하여 위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갖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A, C의 재무상태 악화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원고가 피고 A,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피고 A, C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는 행위,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며,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6. 15. 선고 2006다12046 판결,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올라 제1호증의 1의 기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익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는 28,042,210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시가는 46,811,120원이었고, 한편이 사건 E 토지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그 형질이 동일하며, 이 사건 제2부동산과 크기도 비슷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 중 1/3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시가는 이 사건 제2부동산 시가의 1/3 정도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외에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 앞서 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8억여 원2),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근저당권자였던 여산일심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5,000만 원상당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6,700만 원인데, 그 중 5,000만 원은 피고 D이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나머지 1,700만 원은 피고 D이 피고 B에게 가지고 있었던 대여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으로 각 그 지급에 갈음하여 실제 피고 D이 피고 B에게 지급한 돈은 전혀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형인 피고 D에게 매도하거나 증여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 및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는 각 추정된다.

다. 피고 D의 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 D은, ①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 D이 일부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인수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의 사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으며, 위 매매계약을 통해 원고 등 피고 B의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의식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②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E 토지는 종중의 위토로서 피고 B, D 및 또 다른 형제인 소외 G 3인의 총유재산인바 개별 지분의 처분은 불가능하므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 ·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B와 피고 D와의 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시기 및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등 그 내용,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시기,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부터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피고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해 가기도 하였다는 피고 D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D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E 토지가 공유가 아닌 총유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가) 사해행위의 성립 범위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마쳐져 있던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변론종결 당시 위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올라 제1호증의 1의 기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종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50,637,437원(= 대출원금 50,000,000원 + 이자 637,437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8. 10.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시가 합계가 76,788,810원(= 이 사건 제1부동산 28,785,050원 + 이 사건 제2부동산 48,003,7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그 시가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는바,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시가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26,151,373원(= 76,788,810원 - 50,637,437원) 이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으로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2)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은 원상회복의 원칙적 방법인 원물반환으로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26,151,37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D은 원고에게 26,151,3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그리고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D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4. 10. 31. 접수 제489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은영 판사 문경훈 판사 박혜란 연가로 인한 서명불능

별지

1)이하 아래 [표] 기재 순번대로 '이 사건 제○보증'이라고 한다.

2)위 구상금채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연대보증약정이 성립되어 있었고, 피고 A,C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사고에 따라 구상금채무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무가 성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 당시의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8억여 원은 피고 B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